

#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 33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16. 3. 4.(금)  
제안자: 장선배 의원 등  
(박봉순 위원장)

## □ 수정이유

- 의료원 지도·감독 조항 중 도지사의 “승인” 조항을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맞게 적용 수정할 필요가 있음

## □ 수정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1항의 ‘의장’ 이란 용어는 임원 명칭에 부합하지 않는바, ‘원장’ 으로 수정하며, 같은 조 제3항 근거법령 표기를 시행령에서 법률 명칭으로 수정함
- 안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도지사의 승인 대상으로 ‘회계’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데, ‘회계’ 란 용어는 그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실행에 따른 문제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상위법에서 도지사의 승인대상이 아닌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‘회계’ 문구를 삭제하였으며, 같은 항 제6호 또한, 단체장 재량범위의 과도한 인정으로 판단되어 삭제 수정함

#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 1. 원장 1명
  2.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
  3. 감사 1명

안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, 성별과 각 호의 인원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”를

“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”로 하고,

같은 항 제2호 중 “지방의료원”을 “의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충청북도 도의회에서”를 “충청북도의회에서”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2항은 현행대로 한다.

안 제10조제2항제6호는 삭제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 (개정안)	수 정 안
<p>제3조(임원) ① 임원은 의장 1명,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,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② 의료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.</p> <p>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, 성별과 각 호의 인원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충청북도 의료원관리 담당과장 1명</li> <li>2.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</li> <li>3. 충청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</li> <li>4.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 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</li> <li>5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</li> </ol>	<p>제3조(임원) ①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장 1명</li> <li>2. 이상 8명 이상 12명 이하</li> <li>3. 감사 1명</li> </ol> <p>② 의료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.</p> <p>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) 제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충청북도 의료원관리 담당과장 1명</li> <li>2.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</li> <li>3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</li> <li>4.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 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</li> <li>5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</li> </ol>

원 안 (개정안)	수 정 안
<p>6.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④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이사회) ①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.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지도·감독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(제4호의 경우에는 인가를 말한다)을 받아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의료원의 인사, 복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. (현행과 같음) 4. 의료원 정관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5.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서, 예산서 및 결산서 6. 그 밖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</p>	<p>6.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④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이사회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지도·감독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(제4호의 경우에는 인가를 말한다)을 받아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의료원 정관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5.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서, 예산서 및 결산서 6. (삭 제)</p>

##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)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원장 1명
2.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
3. 감사 1명

② 의료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 의료원관리 담당과장 1명
2.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
3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
4.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 보건 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
5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
6.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승인을 얻어야”를 “승인(제4호의 경우에는 인가를 말한다)을 받아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

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의료원 정관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5.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서, 예산서 및 결산서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임원) ① <u>임원은 이사장 1명,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,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의료원장(이하 “원장“이라 한다)은 이사장을 겸임한다.</u></p> <p>③ <u>이사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5호 중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충청북도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</u></li> <li>2. (생략)</li> <li>3. <u>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</u></li> </ol>	<p>제3조(임원) ① <u>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원장 1명</u></li> <li>2. <u>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</u></li> <li>3. <u>감사 1명</u></li> </ol> <p>② ----- - <u>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<u>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 임명한다. ----- ----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----- -----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충청북도 의료원관리 담당과장 1명</u>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<u>충청북도의회-----</u>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4. <u>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</u></p> <p>5. <u>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</u></p> <p>&lt;신 설&gt; ④·⑤ (생략)</p>	<p>4. <u>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 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 보건 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</u></p> <p>5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</p> <p>6. <u>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</u> 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지도·감독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원장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<u>승인을 얻어야 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그 밖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0조(지도·감독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승인(제4호의 경우에는 인가를 말한다)을 받아야 --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의료원 정관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<u>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서, 예산서 및 결산서</u></p>